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6-8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사유

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(지역관광협의회 설립) 본조신설에 따라 지역관광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2조)

나.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기능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설립허가하는 경우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, 주민 등 이해 관련자 고루 참여
- 관광협의회 기능
  -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
  -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
  -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  - 마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·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
  -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  - 마포구 관광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업무 수행
  -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다. 관광협의회 구성 및 조직(안 제6조)

- 협의회 회원들의 자발적 구성
- 협의회 위원 구성
  - 이사 : 10명 이상 20명 이하(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)
  - 감사 : 2명

라.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(안 제13조)

-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『관광진흥법』 제48조의9 (지역관광협의회 설립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 되는 규제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(2016. 9. 13. ~ 2016. 10. 3.)
- 나.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권고사항 있음

관련 조문	검토 결과	조치 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9조(해촉)</li> <li>• 제11조(회의 등)</li> </ul>	이해충돌가능성	감사담당관에서 권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요망

- 조치결과 : 반영

조문	구청장 방침	상정안
제9조 (해촉)	협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협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조문	구청장 방침	상정안
제11조 (회의 등)	① ~ ④ (생략) ⑤ ~ ⑦ <신설>	① ~ ④ (구청장 방침과 같음) ⑤ <u>협의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에 대한 회의를 할 경우,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u> ⑥ <u>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</u> ⑦ <u>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

다.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개선사항 있음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은

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근거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, 분석평가 항목 중 '성별 균형 참여' 필요성이 있음

○ 조치결과 : 반영

조문	구청장 방침	상정안
제6조 (구성및조직)	② <u>협회의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.</u>	② <u>협회의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<u>성별을 고려하여</u> 구성한다.</u>

라. 자체 추가 검토 : 수정사항 있음

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참여 필요



○ 조치결과

조문	구청장 방침	상정안
제12조 (실무협의회)	① (생략) ② <신설>	① (구청장 방침과 같음) 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6.10.11.)

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
사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.

**제3조(협의회의 설립허가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,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
  2.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
  3.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 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
  5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관광 진흥을 위한 장·단기 시책의 수립 및 건의
  6.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  7.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- ② 협의회는 구의 관광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5조(운영)** 협의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그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.

**제6조(구성 및 조직)**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구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, 협의회는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, 필요시 부구청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④ 그 밖의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한다.

**제7조(회장 등의 직무)** ① 회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, 해당 협의회는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임기)**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9조(해촉)** 협의회는 회장은 위원이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10조(간사)**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 
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.

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11조(회의 등)** ① 구청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 회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 회장은 해당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협의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에 대한 회의를 할 경우,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⑥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⑦ 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**제12조(실무협의회)** ① 협의회는 구의 안전행정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협의회 운영지원)** ① 구청장은 협의회와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.

1.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

2.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

③ 협의회와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협의회 허가 취소)**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정관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

2. 협의회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
3. 「관광진흥법」 등 상위 법령에 어긋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,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안 제13조 제1항  
: 구청장은 협회회의 각종 사업 및 협회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비용 총계 : 50,000천원(2017 세출예산 요구액)
- 산출내역

편성목	예산액(천원)	내용
민간이전(민간경상사업보조)	30,000	마포구 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
민간이전(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)	20,000	마포구 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 
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마포구 관광협의회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은 2017년 세출 예산 요구액 기준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안전행정국 관광과 허현화
연락처	02-3153-8652